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4
----------	-----

2019. 12. 16.(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2월 4일

-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용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보조기기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4조)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충청북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7조)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로 개정함.
- 안 제2조(정의)에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보조기기 서비스”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함.
  - 현행 조례에서는 “보조기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 제정에 따라 “보조기기”로 명칭이 변경된 바, 본 조례에서 이를 적용함.
  -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까지 확대된 바,

본 조례에서 이를 적용함.

○ 안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에는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관련 정보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

- 이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따른 규정임.

○ 안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는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의견 반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조기기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충북('19) 잠재적 이용대상: 노인인구(261,763명), 장애인 인구(97,086명)

○ 안 제6조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충북에서는 2013년부터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안 제6조 각 호에는 보조기기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및 보조기기 대여 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 조례에 규정된 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도차원의 예산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현재 도 보조기기센터에서는 총 130개의 보조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50%(70여개) 이상의 기기가 내구연한(耐久年限)이 만료된 기기임

※ 내구연한 만료 기기의 교체 예상 비용: 45,974,200원

● 또한,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제품의 구입, 전시, 체험도 필요한데, 현재 보조기기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

할 수 없음

- 따라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및 신규 출시 제품의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및 보조기기 대여 사업이 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는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보조기기센터는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광역보조기구센터 공모사업에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케이스인 바, 위탁 우선권을 부여하되,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및 위탁기관의 개별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위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보조기기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함
- 또한,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관련 기관 간담회,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

## □ 센터개요 ('13. 5. 30. 개소)

- 사업량 : 1개소
- 기관명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이순희)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원 내)
- 면적 : 462.81㎡ (140평)  
(사무실 및 전시·체험 공간, 평가실, 상담실, 수리·개조실 구성)
- 인력구성 : 6명

구분	계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
인원	6	1	1	1	3
업무	-	· 사업총괄	· 사업전반진행 담당 및 조정, 인력관리	· 사례관리 · 회계, 총무 등	· 보조기구 서비스 및 개조제작 등

- 총사업비 : 314,816천원 (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 인건비 / 5명 (급여, 초과근무수당, 명절상여금) : 156,598천원
  - 물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 46,652천원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 111,566천원

## □ 주요기능

- 상담 및 평가 : 특성에 맞는 상담, 분석, 전문 정보제공 및 서비스
- 적용 및 훈련 : 개조 및 제작, 구매전 체험, 단기임대와 사용설명 교육
- 사후관리
  - 성장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 파손,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수리·세척 (소모품 교체 등 A/S)
- 정보제공
  - 콜센터 운영 : 전화상담을 위한 정보제공
  - 견학 프로그램 : 전시장 및 체험실 운영
  - 홍보 : 찾아가는 전시회, 리플릿 제작, 언론매체 활용 등
  - 전문인력교육 : 세미나, 학술대회, 관리자지원 교육 등

## □ 추진실적

사업구분		세부사업		실 적(2019. 상반기)
필수 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	상담 및 평가	욕구분석(상담)	735명
			평가	
		적용 및 훈련	정보제공	
			구매 전 체험 (단기대여)	
			교육 및 훈련	
			개조 및 제작	
		재원확보	자부담	
			센터지원	
			무료교부사업	
			보장구 건강보험	
			보장구 의료급여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	
			정보통신기기	
			보조공학기기	
			재활보조기기	
			보철구지급	
			타부처 기타	
		민간		
		사후관리	보조기구 수리	
	장애인보조기구 소독·세척			
	사후평가/서비스관리			
	정보제공	콜센터운영		397건
견학프로그램운영		15건		
전문인력교육		14건		
홍보		24건		
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자원 발굴	지역사회연계		5건	
	민간자원(공적급여) 발굴		4건	

## <서비스 영역별 보조기구 예시>

서비스 영역	보조기구	서비스 영역	보조기구
감각보조 기구	     	자동차 개조	     
앉기 및 자세	     	컴퓨터 접근	     
휠체어 및 이동기기	     	보완대체 의사소통	     
일상생활 보조기구	     	레저활동 보조기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
----------	-----

발의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최경천,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조기기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4조).
- 다.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라. 충청북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7조).
- 바.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90호
-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

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재활보조기기 지원 및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비, 소요 경비 등

## 3. 관련조문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제4조
-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제6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 나. 추계 결과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 69,678천원 (매년)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지원 : 212,400천원 (매년)
-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20,000천원 (매년)

###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 국비 80%, 도비 14%, 시군비 6%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지원 : 국비 50%, 도비 50%
-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02,078	410,744	410,744	410,744	410,744	1,945,054
국 비		161,942	218,150	218,150	218,150	218,150	1,034,542
도 비		125,955	178,038	178,038	178,038	178,038	838,107
시군비		14,181	14,556	14,556	14,556	14,556	72,405
세 출		302,078	410,744	410,744	410,744	410,744	1,945,054
장애인재활보조기기		69,678	75,928	75,928	75,928	75,928	373,390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212,400	314,816	314,816	314,816	314,816	1,471,664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302,078	410,744	410,744	410,744	410,744	1,945,054
의존 재원	소 계	161,942	218,150	218,150	218,150	218,150	1,034,542
	보조금	161,942	218,150	218,150	218,150	218,150	1,034,542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5,955	178,038	178,038	178,038	178,038	838,107
	지방세	125,955	178,038	178,038	178,038	178,038	838,107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14,181	14,556	14,556	14,556	14,556	72,405
기 타 (민간 자부담)							